

직권 조치 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14일

거창읍장 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장 *석	장 *석 1975-04-03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2-14